

01

2012년도 교육강사 초빙 공고



우리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설립된 단체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설계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협회 교육의 원활한 운영과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하여 학력과 자격을 겸비하고 실무경험이 많은 분을 교육강사로 초빙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교육훈련강사의 자격기준

구 분	학력 및 자격기준	비 고
현장실무자	- 4년제 이상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현장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특급기술자로서 해당분야의 강의 경력이 2년이상인 자	- 해당분야에 대한 이론·기술·실무·홍보 및 정신훈련
교수 및 연구원	- 대학의 전임강사 및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분야에 대한 이론·기술·실무·홍보 및 정신훈련
공무원 및 전문단체 임·직원	- 정부부처 사무관급 이상 또는 관련기관의 임원 및 부장급 이상인 자	- 사회적인 홍보와 공감대 형성 위주의실무 및 정신교육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제출서류

- 교육강사 인력POOL등록신청서(우측상단 사진2매부착 또는 파일전송)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 1부
- 자격증사본(자격증소지자에 한함)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자기소개서(전문분야별실무경험중심으로) 1부

■ 서류접수

- 접수마감 : 2011. 12. 30(금)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김진형 대리 : alfirk@naver.com)

■ 접수처

- ☎151-80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교육훈련팀 전화(02)2182-0782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 후 적합하신 분을 교육강사(시간강사)로 초빙할 예정입니다.
- 2012년도 신설분야는 우선 초빙 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공지사항에 게재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2 2012년 전기안전관리교육비 안내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전기사업법 제98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전기안전관리교육과 관련하여, 2012년 전기안전관리교육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 명 칭 : 전기안전관리교육 및 전기안전관리교육비
- 대 상 :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 전기사업법 제9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 교 육 비 : 85,000원/인당
- 시행일자 : 2012년 1월 1일

문의 큐넷 1644-8000

03 2012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안내

■ 검정시행일정

등급	회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방문제출)	실기 (면접) 시험	합격자 발표
		인 터 넷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기술사	제96회	1.13~1.19	2.12(일)	3.23	3.26~3.29	4.28~5.10	5.18
	제97회	4.20~4.26	5.13(일)	6.29	7.2~7.5	7.28~8.9	8.17
	제98회	7.20~7.26	8.12(일)	9.21	9.24~9.27	10.27~11.8	11.16
기능장	제51회	3.16~3.22	4.8(일)	4.27	4.30~5.3	5.26~6.8	6.29
	제52회	6.29~7.5	7.22(일)	8.3	8.6~8.9	9.8~9.21	10.19
기사 (산업기사·서비스)	제1회	2.3~2.9	3.4(일)	3.16	3.19~3.22	4.21~5.4	6.1
	제2회	4.27~5.3	5.20(일)	6.8	6.11~6.14	7.7~7.20	8.17
	제3회	8.3~8.9	8.26(일)	9.7	9.10~9.13	10.13~10.26	11.23
	제4회	8.24~8.30	9.15(토)	10.5	10.8~10.11	11.3~11.16	12.14
기능사	제1회	1.13~1.19	2.12(일)	2.24	2.27~3.2 (3.1제외)	3.24~4.6	4.27
	제2회	3.16~3.22	4.8(일)	4.27	4.30~5.3	5.26~6.8	6.29
	제3회	전문계고등학교 필기시험면제자 검정 ※일반인 필기시험 면제자 제외			5.14~5.17	6.16~6.29	7.20
	제4회	6.29~7.5	7.22(일)	8.3	8.6~8.9	9.8~9.21	10.19
	제5회	9.21~9.27	10.20(토)	11.2	11.5~11.8	12.1~12.14	12.28

【 유 의 사 항 】

- 원서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아래 “등급 및 종목별 시행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토요일 시행 시험 - 기사 제4회 필기시험 및 실기 필답형 시험
- 기능사 제5회 필기시험 및 실기 필답형 시험
- '12년부터 개편된 직무분야 체계를 적용(26개 분야)

■ 수험원서 접수

가. 수험원서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홈페이지 : www.Q-net.or.kr

나. 수험원서 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다. 수험원서 접수기간

-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면접)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타 대상자
 - 필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필·실기시험 면제자 : 원하는 일자에 접수가능

■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회별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별 시행회”를 정확히 확인하여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실기 필답)시험 시험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 급	부	시험시간	비고
기 술 사	-	09:00 ~ 17:20	※ 입실시간(시험시작 30분전) ※ 기사, 산업기사(서비스) 등급은 종목별 시험 시간이 상이함
기 능 장	2부	11:30 ~ 12:30	
기 사	1부	09:30 ~ 제한시간	
산업기사(서비스)	2부	13:30 ~ 제한시간	
기 능 사	1부	09:30 ~ 10:30	
	2부	11:30 ~ 12:30	
	3부	14:00 ~ 15:00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일부종목)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당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첫날부터 8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공단 경력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인 무효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당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첫날부터 4일내 제출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에 한함
- 외국서류 구비 사유로 기간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지정된 기간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을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 할 수 있음
- 제출된 응시자격서류는 D/B로 구축하여 보관·관리하므로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이전에도 제출할 수 있음(단, 경력서류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가지를 첨부해야만 함)

-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 임
- ◎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는 4일간이며 첫날 0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임
- ◎ 실기(면접)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함
- ◎ 응시자격서류심사 종료 후 서류심사 불합격자(자격미달,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공고하니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수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므로 평일에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종목은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수험자 지참물 미지참시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주관식 필기로 시행하는 실기시험(실기 필답형)은 시험이 시작되는 첫번째 일요일에 전국 동시 시행됩니다.(기사 제4회·기능사 제5회 필기시험 및 실기 필답형 시험은 토요일 시행)

■ 상시 검정 안내

- ◎ '12년부터 상시검정 시행종목이 9종목에서 12종목으로 확대되었으며, 정기검정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 ◎ 상시검정은 공단에서 위탁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며, 원서접수 및 자격검정 정보안내는 종전과 같이 www.Q-net.or.k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정 정보 안내

- ◎ 인터넷원서접수 : www.Q-net.or.kr
- ◎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아름다운 명언

It takes no more effort to expect the best,
than to fear for the worst.
It's healthier, more productive,
and a lot more fun.

— 필립 P. 햄버트 박사 —

최악을 두려워하는 데 노력이 불필요한 것처럼
최상을 기대하는 데도 노력이 들지 않는다.
언제나 최상을 기대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더 생산적이며 훨씬 더 재미있는 일이다.

04

한전 배전공사감리업무수행기준 개정 안내



■ 개정배경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기준 개선
- 현장여건을 반영한 감리운영기준 정립으로 배전공사 시공품질 확보

■ 주요 개정내용

▶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절차

관련조항	현행	개정	개정사유
2.3.1 일반행정업무	· (신설)	· 감리업무일지는 '배전공사 협력회사 시스템'에 입력	현장관리 강화
2.3.2 시공관리	· (신설)	· 감리원의 공사업자 일용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실적 확인절차 및 참고서식 추가 - 공사업자 : 실적서 제출 - 감리원 : 실무입직업일보 작성 및 신고서 적정성 확인	감리원의 퇴직공제부금 적정여부 확인업무 명확화
2.2.6 착공신고서 검토 및 제출	· 공사업자의 인원 및 장비 확인업무 - 착공 서류검토 시행 - (신설)	· 공사업자의 인원 및 장비의 확인업무 - 착공 서류검토 시행 - 인원 및 장비의 현장실사 및 결과보고사항 명시	감리원의 현장실사 업무 명확화

▶ 감리용역 적격심사기준

관련조항	현행	개정	개정사유
5.1, 제4조 (심사자료 제출)	·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 통보를 받은날부터 지정한 기일내(4일이내에서 지정)	·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 통보를 받은날부터 지정한 기일내(5일이상 지정)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개정 내용 반영
	· 적격심사 서류 보완기한 :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	· 적격심사 서류 보완기한 :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관련조항	현행	개정	개정사유
[별표 8, 11] 토목감리원 평가기준	· 토목감리원 자격 : 토목분야 감리원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토목(산업)기사 보유자	· 토목경력 감리원 자격 : 토목분야 감리원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토목 기술 분야 초급기술자등급 이상의 자격 보유자 · 단, "전기감리원 및 토목기술분야 초급기술자 등급 이상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자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시에는 토목보조감리원 대신 전기보조감리원으로 대체가능	토목감리원 인정범위 확대로 인력난 해소 및 시공 품질 향상
[별표 8, 11] 교육훈련 평가기준	· 전력기술인협회 주관 「전기감리」관련 교육훈련 2주이상 수강시 만점 - 적격심사 : 0.4점 만점 - PQ심사 : 2점 만점	· 전력기술인협회 주관「전기감리」관련 교육과정별로 이수자 가점 및 배점 부여 - 적격심사 : 일반 0.2점, 전문 0.4점 - PQ심사 : 일반 1.0점, 전문 2.0점 · 전문교육은 2회수로 인정 · '13. 1.1월이후부터 시행	「배전감리」 전문 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업무수행 능력 제고
[별표 8-1, 12-1], 기술개발실적 평가기준	· 특히, 전력신기술 및 실용 신안의 최초 출원인 인정범위 : 입찰참여 감리업체 대표 및 소속 직원	· 특히, 전력신기술 및 실용 신안의 최초 출원인 인정 범위 : 입찰참여 감리업체 대표	지경부고시 세부평가 기준 반영

■ 시행일자 : '11. 12. 7일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공지사항에 게재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